

20

통일총서

分斷國의 統一과 教訓

教授 張錫濬(行博)

통일연수원

차 례

1. 序 言	3
2. 베트남의 統一과 教訓	5
가. 分斷過程	5
나. 統一過程	8
다. 남베트남의 敗亡原因과 教訓	21
3. 예멘의 統一과 教訓	27
가. 分斷過程	27
나. 統一過程	29
다. 統一의 教訓	43
4. 獨逸의 統一과 教訓	47
가. 東方政策과 基本條約	47
나. 交流協力의 過程	56
다. 統一過程	59
라. 統一後 分野別 統合實態	72
마. 統一의 教訓	83
5. 結 言	86

1. 序 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分斷國이 생겨났다. 즉 1945년 5월 8일 독일이 분단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중국과 대만이 분단되었고, 1954년 7월 21일 베트남이 분단되었다.

한편 남북예멘은 사실상 分斷國家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分裂國家로 구분되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고, 전후간 50년의 時差를 두고 남북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즉 1917년 오스만터키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民主政權을 수립한 지역이 북예멘이었고, 1967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지역에 共產政權이 수립된 것이 남예멘이었다.

이와 같은 분단국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집요한 統一努力 끝에 차례로 통일을 실현해 왔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赤化統一을 실현하였고, 1990년 5월 22일 예멘이 平和統一을 실현하였으

며, 같은 해 10월 3일 독일이 서독에 의한吸收統一을 실현하였다.

한편 중국·대만의 분단문제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분단국문제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1971년 UN에서 대만이 追放된 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中共을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하고, 대만은 중국내 영토의 일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분단국가는 ‘우리 한반도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45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시대’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 시대 공산주의의 宗主國家 노릇을 해 온 소련이 와해되고, 改革과 開放政策에 따라 공산주의를 포기한 채 민주화·자유화로 東歐諸國이 돌아섬으로써 ‘이데올로기의 終焉을 고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이러한 ‘統合의 年代’, ‘統一의 時代’에 즈음하여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分斷現實 속에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시대 最高價值요, 民族史의至上課題인 祖國統一을 위하여 7천만 민족의 뼈아

픈 각성과 일대 분발로 민족적 저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우리 앞에 중첩되어도 기어이 統一大業을 성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분단국들의 統一事例’를 면밀히 검토·연구하여 우리의 통일을 위한 ‘他山之石의 教訓’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일찍이 孔子께서 제자들에게 설파하기를 “三人行이면 必有我師”라 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분단 국가였던 남북베트남, 남북예멘, 동서독의 통일사례를 중심으로 分斷過程과 統一過程 그리고 통일 후 각 분야의 統合過程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統一教訓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베트남의 統一과 教訓

가. 分斷過程

베트남은 한반도나 독일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식민지에 반대하는 民族解放鬪爭에서 야기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국가간의 國際

會議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의하여 분단되었다.

베트남은 19세기 이래, 약 80년간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勃發한 후인 1940년에 일본군이 진주하여 다시 5년간 식민통치를 받았다.

그 후, 1945년 日本軍의 항복으로 영국과 중국이 베트남을 남북으로 점령하였는데, 프랑스는 먼저 영국과, 뒤이어 중국과 협정을 맺음으로써 베트남을 되찾았다.

1945년 8월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을 植民統治하게 되자 1946년 12월 29일 베트남군이 하노이에서 프랑스군을 공격하게 된 것이 印支戰의 도화선이 되었다.

1954년 7월 21일 제네바회담에서 印支駐在 프랑스군사령관과 하노이의 베트민(Vietminh)사령관 사이에 「休戰協定」이 체결됨으로써 베트민(Vietminh)군은 17도 이북으로, 프랑스군은 17도 이남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것이 직접적인 분단의 계기가 되었다. 제네바회담의 「休戰協定」에 따라 1956년 7월 남북베트남에서 自由總選舉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북베트남은

이미 1954년 10월 11일부터 강력한 統治權을 확립하여 共產化過程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남북베트남의 자유총선거 실시는 실현되지 못하고 마침내는 북베트남에 胡志明이 이끄는 共產政權이 수립되었다.

한편 남베트남은 1955년 10월 독자적으로 國民投票를 실시하여 憲法을 제정·선포하였다. 그리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곧 고 딘 디엠을 大統領에 선출함으로써 남베트남政府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의 協商에 따라 남베트남에서 프랑스군이 완전 철수하고, 이 지역에서 미군이 남베트남 지원을 맡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은 1955년 東南亞條約機構의 창설과 더불어 남베트남정권에 군사지원 및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개시하였다. 1961년 미국의 캐네디 대통령은 남베트남의 內政改革과 援助增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으나, 곧 고 딘 디엠 정권은 1963년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붕괴되고 말았다.

남베트남의 政情이 불안한 틈을 타서 북베트남의

무력공세가 가열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1964년 통킹 만사건이 발생하자 북베트남은 본격적으로 미군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1965년 본격적인 北爆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은 단계적으로 戰線을 확대해 나가면서 북베트남으로 하여금 休戰協商에 응해 오도록 정치적·외교적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이와 같은 미국의 압력에 냉담하면서 도리어 협상의 선행조건으로 美軍撤收, 北爆中止를 강력히 내세웠다. 결국 북베트남의 강경태도에 부닥친 미국은 戰爭의 포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 統一過程

(1) 베트남戰爭

북베트남의 對남베트남 침투는 195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남베트남 정부의 수립과 미국의 防衛公約

에 따라 胡志明은 전략을 수정하여, 군사공세로부터 남베트남 내부에서 테러행위와 게릴라전을 위주로 하는 戰法으로 바꾸었다.

1958년 남베트남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테러행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즉, 7월에는 비엔호아의 美軍基地를 기습하여 미군사고문단원 2명이 피살됨으로써 첫 희생자를 기록했다.

1960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케네디는 존슨 부통령과 맥스웰 테일러 장군을 남베트남에 파견하여 현지정세를 검토케 했으며, 남베트남에 대한 經濟援助와 군사고문단의 증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때는 美軍 地上戰鬪部隊는 직접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베트남군과 주민들을 격리시키려는 이른바 戰略村作戰을 추진하여 초기에는 다소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남베트남 내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점차 守勢에 몰리게 되었다. 1963년 1월 남베트남군은 ‘압팍’ 전투에서 패배했고, 남베트남정부에 대한 佛教徒와 學生들의 반정부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¹⁾이 발생하자, 미국의 지상군부대가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쟁에 參戰하게 되었다. 일단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되자 베트남에 파견되는 美軍의 숫자는 급증했다. 처음에는 미군이 공산군과의 접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戰勢는 호전되지 않았다. 남베트남군은 베트콩과의 접전에서 번번이 敗退했다.

(2)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Viet-Cong)」의 出帆

남베트남 정부수립 4년째인 1959년에 民衆勢力들이 중심이 되어 농촌 지역에서 反政府活動을 전개하면서 점차 반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농촌폭동은 초기의 산발적인 要人暗殺과 테러에서 조직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남베트남정부는 이들에 대한 抹殺政策을 펼

1) 「통킹만 사건」이란, 통킹만에 정박중이던 미국 첨보선 메독스號와 터너조이號가 1964년 8월 2일과 4일, 북베트남 초계함의 습격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미국은 북베트남 해군시설에 폭격명령을 내리는 한편 “동남아에서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통킹만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 그러나 이들 반정부 세력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나갔다.

미국은 사이공에 「베트남군사원조사령부(MACV)」를 설치하고 미국인 공작요원 9,865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남베트남정부와 미국은 平定計劃에 착수하여 농민을 강제로 집단 수용하는 戰略村을 설치했다(약 8,679村).

남베트남의 수많은 농민들은 조상 전래의 집에서 쫓겨나 포로수용소와 같은 強制集團收容所에 이주됨으로써 농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戰略村은 농민과 반정부세력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이러한 혼란중에 元老 佛教僧들의 분신자살과 불교도의 非暴力 反政府鬪爭은 결국 고 딘 디엠 정권의 몰락을 초래했다.

당시 비폭력 불교도 집회에서 軍隊에 의한 살상은 UN총회의 의제로 上程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1960년 12월 20일 적극적인 반정부 저항운동가를 중심으로 남북통일과 평화·중립·독립을 지지하는

재야세력들이 규합하여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Veit-Cong)」을 결성, 남베트남에 있어서 정치·군사투쟁에 일체의 책임을 지는 組織體制를 갖추어 다음과 같은 ‘10개 항의 강령’을 선포했다.

① 고 딘 디엠 정권의 타도, 민족·민주연합정부의 수립

②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

③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의 건설

④ 소작료 경감과 점진적 토지개혁

⑤ 민족문화의 건설

⑥ 인민의 군대 건설

⑦ 남녀동등권·민족평등·在베트남 외국인과 해외체류 베트남인의 권리보장

⑧ 평화적·중립적 외교정책

⑨ 남북베트남의 관계정상화와 평화통일

⑩ 세계평화 옹호

한편, 북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 출신 이주자들을 남베트남으로 復歸시켜 베트콩과 합세토록 했다.²⁾

2) 1963. 3. 25. 북베트남 군기판지 「관도이 난잔」지 참조.

1961년 남베트남군 23만명 중, 도망병·탈영병들이 속출했고, 이들은 대부분 베트콩에 합류했다.³⁾

베트콩의 주도세력은 농민·노동자·학생·청년·부인 등 방대한 조직을 가진 세력들의 규합체였다.

베트콩의 정치적 기반은 광범위했고, 그 조직은 각계각층을 망라했다. 북베트남의 「人民革命黨」에서도 서기장 보찌 꽁을 파견했고, 민주당, 급진사회당 등 左翼政黨에서도 서기장 우엔 반찌에우와 훤후엣을 파견했다. 그 외에도 기독교에서 이리 알레오, 불교계에서 수명의 대표, 소수민족인 라테族도 대표를 파견하였다. 베트콩 의장은 우엔 후토라는 변호사로 獄中 當選되었다.

베트콩의 사회적 기반도 광범위했다. 수많은 농민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점령지구를 解放區로 선포하고 농민에게 土地를 분배해 주고,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해 收穫量을 증대시켜 농민들의 信賴를 구축해 갔다.

3) 李泳禧, 「베트남전쟁」(두레신서, 1985), p.58("1964년에 2,300명 탈주")

베트콩은 도시에도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었다.
「베트남해방노동조합연합」이라는 전투적 조직을 만들어 反美鬪爭의 파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1962년에는 49만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베트콩은 學生運動圈에도 침투했다. 그리하여 시위운동·합법활동과 비합법활동을 교묘하게 결합시킨 여러가지 反政府運動을 추진했다.

또한 베트콩은 정부의 공무원·군인 내부에도 상당수의 內通者를 배치했다. 그리하여 정책기밀 및 군사작전기밀을 미리 探知하여 기민하게 처리했다.

이와 같이 베트콩은 많은 인민의 支持를 받는 조직으로 성장해 갔다.

(3) 「베트남 平和協商」

1965년 4월 북베트남은 이른바 ‘평화협상 4개항’을 내놓았다.

①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고 전쟁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② 통일될 때까지 베트남에 외국군이 주둔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軍事同盟에도 가담해서는 안된다.

③ 베트남의 국내문제는 民族解放戰線의 강령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④ 베트남의 통일은 외부의 간섭없이 베트남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협상조건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③항의 “민족해방전선의 강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남베트남정부의 타도’라는 조건은 들어 줄 수 없는 것이어서 協商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美國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은 14개 항으로 집약되었다.

- ① 1954년과 1962년의 제네바협정에 기초한다.
- ②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협상을 환영한다.
- ③ 미국은 무조건 대화를 환영한다.
- ④ 미국은 東南亞會議의 개최를 환영한다.
- ⑤ 적대행위의 중지를 위한 예비회담의 개최를 환영한다.
- ⑥ 북베트남이 제의한 ‘4개 항의 토의’를 환영한다.
- ⑦ 미국은 동남아에서의 軍事基地를 원치 않는다.
- ⑧ 미국은 베트남의 평화가 정착되면 미군을 철수

시킨다.

⑨ 미국은 베트남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정부수립을 적극 지지한다.

⑩ 베트남의 통일은 베트남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⑪ 동남아국가들의 非同盟이나 中立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한다.

⑫ 미국은 동남아의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을 희망한다.

⑬ 베트콩은 북베트남의 침략행위가 중지되는 즉시 協商에 참여시킬 것이다.

⑭ 미국은 北爆을 중지할 용의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북베트남은 서로 平行線을 긋는 주장을 내세워 조금도 양보없이 팽팽한 대결을 계속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의 北爆은 더욱 치열해졌고, B-52機의 북쪽이 정기적으로 감행되었다. 1966년 말에는 駐越美軍이 계속 증파되어 무려 40만명을 넘게 되었다.

地上戰과 北爆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전쟁이

가열되자 북베트남은 ‘무조건 북폭중지’,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침투중지를 보장하라.’고 맞서는 입장으로 압축되는 상황에 놓였다.

1966년 말 미국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즉 “미국이 무조건 北爆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과 북베트남은 적당한 시기가 지난 후 서로 戰爭을 축소하기로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의 적당한 시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論難이 일게 되었고, 미국은 적당한 시기는 “북폭이 중지된 후 6개월이 지나면 남베트남에서 미군과 북베트남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解明했다.

그리고 제2단계 협상은 1966년 11월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10개항으로 제안을 수정·정리하였다. 결국 “북베트남의 남베트남 침투중지를 보장받겠다.”는 意志의 표현으로 수정된 데 불과했고, 북베트남은 계속하여 무조건 北爆中止를 고집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1968년 3월 31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북폭을 부분적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북베트남은 4월

3일 “미국의 폭격과 그밖의 모든 전쟁 행위를 무조건 종식시키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국측 대표와 자리를 같이 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1968년 5월 10일 파리會談豫備會議가 열리게 되었다. 회담은 처음부터 복잡한 문제들로 얹혀들기 시작했다. 남베트남은 베트콩대표의 참석을 반대했고,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남베트남의 參席을 반대했다. 결국 4개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합의하고, 둥근 圓卓에 둘러 앉으며 국가호칭이나 국기를 表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1969년 1월 25일 파리회담 본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北爆中止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다.

한편 미국의 키신저는 파리회의가 계속되는 중에 닉슨 대통령의 親書를 비밀리에 胡志明에게 전달했고, 곧 이어 胡志明의 회신이 왔다. 그리하여 8월 4일 파리에서 키신저와 북베트남의 수안 투이와의 祕密會談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 비밀회담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키신저와 북베트남측과의 두번째 비밀회담은 1969년 9월 胡志明의 死亡으로 연기되

어 1970년 2월에 열리게 되었고, 레 둑 토와 4차례에 걸친 비밀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새로운 提案으로 “미국과 북베트남간에 협정이 맺어진 이후,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할 것과 총선거가 실시되기 1개월 전에 티우 정부가 辞任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키신저는 진전없는 協商의 전략을 바꾸어 소련과 중국을 통한 압력작전을 성공시켜 나갔다. 이 작전은 아주 주효했다.

드디어 1972년 7월 18일 베트남 平和協商은 끝을 맺었다.

(4) 統一過程

파리협정의 공식명칭은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이며, 이 파리협정 조인 4當事者(①미국정부 ②베트남공화국정부 ③베트남인민공화국정부 ④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는 1973년 6월 13일 調印하였다.

동 협정 제2장의 ‘軍事條項’에 “미국 및 그 동맹국 군대는 전쟁행위중지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사·준군사요원 및 무기·탄약을 남베트남에서 전면 철수·철거하며, 그 후에는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⁴⁾가 현상(현지상태)에서 협정이 규정한 모든 군사적·정치적 해결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베트콩의 實體를 인정했고, 미군철수 후의 남베트남에 두개의 실체를 사실상 承認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파리협정 후, 남북베트남 당사자로 구성된 休戰監視機構는 사실상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쌍방간의 전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북베트남은 군사력의 補強期로 1년을 보낸 후, 1974년 12월부터 남베트남에 대한 무력통일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본래의 의도대로 남베트남에 대한 總攻勢作戰을 1975년 3월 11일을 기해서 개시하였다.

결국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됨으로써 共產化統一로 끝을 맺게 되었다.

4) 두 당사자(남베트남 정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다. 남베트남의 敗亡原因과 教訓

(1) 남베트남의 敗亡原因

남베트남의 參謀總長으로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던 카오 반 비엔 장군은 敗亡原因을 다음과 같이 분석 했다.

- ① 매우 불리한 파리협정을 남베트남정부가 수락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② 미국정부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한 국가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 ③ 미국의 갑작스런 軍援의 대폭적인 삭감은 남베트남 국민과 군대의 사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 ④ 티우 대통령의 중대결정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제2군의 철수가 급히 행해져 작전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 ⑤ 미국이 국가적 공약을 위반하고 共產主義者들과 화해하기로 한 정책변화를 남베트남정부는 깨닫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敗亡原因을 분석하면서 남베트남정부의 잘못도 지적하는 반면, 미국의 背信에 패망원인

의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남베트남의 패망과 赤化統一의 베트남통일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베트남의 적화통일은 歷史的·文化的 傳統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① 베트남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外勢에 대하여 끈질긴 抵抗意識을 지니며 살아 왔다는 점이다.

그러한 역사의식은 중국이든, 프랑스·영국이든, 일본·미국이든 상관없이, 1천년의 지배였든, 1백년의 지배였든, 8년의 지배였든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民族主義運動으로 발전하여 남베트남정부와 미국을 그러한 저항의 대상으로 몰아갔다.

② 농민들의 支持가 정세변화의 勝敗를 좌우해 왔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의 역사에 나타난 激變期의 특징은 농민들의 지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算術的으로 敵의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마음만 정해지면 승리는 農民들의 지지

를 얻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북베트남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베트콩은 이 사실에 '行動綱領'을 맞춤으로써 끝까지 버티어 낼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③ 外國軍은 성공적인 결과를 남기고 돌아간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内戰狀況下에서 일방이 타방을 공격하기 위하여 外國軍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라도 끝내 승리한 경우가 없었다. 泰國軍, 中國軍, 프랑스軍이 그랬고 또 日本軍도 그랬다.

베트남을 프랑스 植民支配의 연장선상에 두고 미국을 프랑스의 代置勢力으로 몰아갔던 북베트남의 전략은 그들의 역사적·문화적 인식과 상통하는 것 이었다.

둘째, 精神的 戰力이 物理的 戰力보다 더 강한 힘을 보여 주었다.

미군의 최첨단 무기와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도 武力이나 技術이 훨씬 낫은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 정신적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 보인 것이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교묘한 방법으로 남베트남군과 미군의 物量政策을 逆으로 이용하면서 그들의 精神戰力を 키워갔다.

셋째, 베트남전쟁은 이데올로기의 兩分法的 戰爭觀에 중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의 參戰目的은 공산세력을 막는 데 있었다. 그리고 남베트남정부도 반공을 國是로 삼았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自國의 이익 때문에 승산없는 전쟁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철수하여 베트남 赤化統一의 길을 터주고 말았다.

또한 같은 시기에 라오스와 캄푸치아가 共產化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는 베트남전쟁을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보기 보다는 國益爲主의 實利戰爭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2) 우리에게 주는 教訓

우리는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찾아야 하는가?

① 국가안보는 自主國防에 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생존과 統一繁榮의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強者存의 철칙과 같이 강력한 자주국방의 힘을 키워야 한다.

② 남베트남에서 政局不安이 계속되고, 전쟁중의 혼란 속에서도 그치지 않고 일어났던 군사쿠데타는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패망을 自招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군사쿠데타에 의한 초대 대통령 고 딘 디엠 형제의 살해로 시작되어 수없이 반복된 정권의 교체는 浮沈하는 정권의 正統性과 權威를 실추시켰고, 정권 생탈에 혈안이 된 일부 몰지각한 군부의 쿠데타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政治的 安定과 正統性이 유지되는 강력한 정부, 그리고 국민화합에 의한 國力伸張이 첨경임을 깨달아야 한다.

③ 남베트남에서 自生한 共勢力인 베트콩을 拔本塞源하지 못한 것이 敗亡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교훈으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창설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라 불

리는 베트콩 세력은 解放農民協會, 解放勞動者協會, 불교·카톨릭단체 등 20여개의 在野團體로 결성되었다. 이 베트콩 세력은 북베트남에서 밀파된 工作要員이 아니라 남베트남에서 자생한 左傾容共勢力이었다. 그 세력이 점차 전국 각지의 농촌까지 파급되어 급기야 남베트남군은 결국 베트콩에게 항복하게 된 것이다.

④ 북베트남의 赤化統一 戰略戰術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전술과 유사하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

1960년 9월 북베트남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수행, 남베트남해방의 성취’라고 했듯이 ‘朝鮮革命의 전국적 승리’라는 목표 아래 적화통일을 위하여 金日成은 “북한을 사회주의의 낙원으로 건설하여 혁명의 참모부로 하고, 남한지역의 혁명을 통한 공산화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볼 때 전략·전술이 유사한 것이다.

또한 통일전략과 전술적 운용면에서도 북베트남이 前衛部隊나 戰線組織을 그 자체로서 革命力量으로 활용하기보다는 革命基地로서 자기들이 직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장용으로 활용하였듯이 북한도 그

러한 戰略戰術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3. 예멘의 統一과 教訓

가. 分斷過程

예멘의 분단은 1517년 오스만터키에 점령되어 그 지배를 받게 된 데에서 源流을 찾을 수 있다. 예멘은 異民族의 植民統治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오스만터키의 支配權에 들어간 예멘은 현지의 토 후세력들이 割據한 상태에서도 이슬람교에 의한 민족의 일체성을 유지해 왔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오스만터키가 붕괴되자 남예멘 지역을 제외한 북예멘이 독립하게 되었다.

1918년 북예멘은 「예멘아랍공화국(Yemen Arab Republic)」을 수립했다. 북예멘은 대외적으로는 非同盟中立路線을 추구하며 대내적으로는 이슬람교의 원리를 국가이념으로 한 立憲共和制 國家였다.

한편 남예멘은 1839년부터 1967년까지 영국의 植

民地였다. 남예멘은 영국함대가 수도 아덴을 점령함으로써 오스만터키의 지배로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바뀌게 되었고, 1967년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무려 128년간 英國의 植民地統治 아래 지배를 받아왔다.

남예멘의 독립은 영국의 自意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예멘의 軍事的 壓力과 남예멘에서의 치열한 反英 테러와 폭동, UN총회 의결(1963. 12) 등의 국내외적 압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1967년 남예멘은 「예멘人民共和國(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정부를 수립했다.

남예멘의 정권수립은 強·穩派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온건파인 「民族解放戰線(NLF)」이 승리하여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수립하고, 사아비 서기장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1970년 남예멘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새 憲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예멘은 한낱 한시에 남북으로 분단된 ‘分斷國家’가 아니라, 1917년 북예멘의 독립과 1967년 남예멘의 독립으로 무려 50년의 時差을 두고 분리 독립되었기 때문에 ‘分裂國家’로 구분하게

되었다.

나. 統一過程

(1) 북예멘의 統一政策

북예멘의 국가성격은 2期로 나누어진다.

제1기는 「宗教國家時代(1918~1962년)」인 「이맘(Imam) 정권의 시대」⁵⁾이다.

제2기는 「軍事統治時代(1962~통일전)」⁶⁾이다.

-
- 5) 북예멘의 정치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18년에서 1948년까지는 이맘 야호야(Imam Yahya)가 통치하였고, 1948년부터 1962년까지는 이맘 아흐마트(Imam Ahmad)가 통치한바, 이 시기를 일컬어 「이맘政權時代」라 한다. 이맘 아흐마트는 1962년 暗殺되었다.
 - 6) 북예멘의 「軍事統治時代」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① 1962~1967년 : 압둘라 살란(Abdullah al Sallal) 군사쿠데타 (아흐마트死亡)
 - ② 1967~1974년 : 라흐만 이르야니(Rahman al Iryani) 무혈쿠데타
 - ③ 1974~1977년 : 이브라힘 함미(Ibrahim al Hami) 군사쿠데타
 - ④ 1977~1978년 : 아흐마트 가쉬미(Ahmad al Ghashimi) 권력승계
 - ⑤ 1978~1990년 :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al Salal) 권력승계(아흐마트 가쉬미 大統領은 남예멘의 테러에 의해 死亡)
- ※ 1990. 5. 22. 살레 大統領이 「통일예멘공화국」의 初代大統領에 취임했다.

북예멘은 잠정적으로 영국의 保護下에 있는 남예멘을 독립시켜 북예멘과 통일을 시키려는 統一努力을 民族主義運動으로 발전시켜 왔다.

북예멘은 1934년 영국과 「國境條約」을 체결하였고, 1964년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과 「友好協力條約」을 체결하여 親蘇政策으로 전환했다. 이는 아직 남예멘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統一政策에 대한 정치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계획이었다.

북예멘의 '이르야니政權(1967~1974년)'은 통일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평화적 협상을 통한 紛爭解決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남예멘은 反政府民族主義者들을 교육시켜 북예멘을 흡수통합하려 하였다. 북예멘은 살레大統領에 이르도록 계속하여 통일정책을 추구해 왔다. 북예멘의 통일정책은 남예멘을 지원하여 獨立을 쟁취하고, 남예멘을 統合하려는 것이었다.

(2) 남예멘의 統一政策

1967년 남예멘이 독립한 후에도 軍政統治者들에

의해 民族主義運動에 의한 統一政策이 계속되어 왔으나 정치권력투쟁 등 불안정한 정치환경이 계속되고 있었다.

남예멘의 통일정책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이었다.

1967년 11월 29일 영국군이 철수했고, 남예멘은 통일정책의 구현보다 오만 및 북예멘과의 國境紛爭問題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후 통일정책을 강조하였지만, 이는 남예멘의 社會主義政策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72년 북예멘이 카마란섬을 武力으로 장악하자 남북예멘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집트의 調停으로 카이로에서 남북예멘頂上會談이 개최되어 敵對關係를 청산하고 ‘통일을 합의한 協定’에 서명하였고, 그후 리비아의 트리폴리에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결국 남북예멘은 「統一基本條約」에 의한 통일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계속되는 國境紛爭과 權力鬭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남북예멘의 통일정책도 경합적인 성격을 띠어 갔

다. 즉 남예멘은 ‘社會主義革命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반면, 북예멘은 ‘이슬람國家를 형성’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남예멘의 정치지도자들은 정통성문제로 도전을 받으면서 권력투쟁에 의한 浮沈을 계속하고 있었다.⁷⁾

(3) 남북예멘의 頂上會談

(가) 트리폴리 頂上會談

1972년 11월 28일 북예멘의 아이니 首相과 남예멘의 하사니 首相이 리비아의 트리폴리에서 頂上會談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9월의 남북예멘 國境衝突問題를 해결

7) 남예멘의 권력투쟁에 의한 정치환경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1967~1969년 : 카흐탄 샤아비(Qahtan al Shaabi), NLF(민족 해방전선) 지도자
- ② 1969~1978년 : 살렘 루바이 알리(Salem Rubayi Ali), 샤아비 사임
- ③ 1978~1980년 : 압둘 화타 이스마일(Abdul Fattah Ismail), 루바이 알리 처형
- ④ 1980~1986년 : 알리 나세르 무하마드 후스니(Ali Nasser Muhammad Hosni)
- ⑤ 1986~1990년 : 하이다르 압둘 바크르 아티스(1990. 5. 22. 통일예멘공화국 초대 총리로 선임됨.)

하는 동시에 남북예멘의 통합을 위한 중대한 회담이 었다.

이 회담의 合意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國號는 「예멘공화국」으로 한다.
- ② 首都는 북예멘의 사나로 한다.
- ③ 國家理念은 共和主義, 民族主義, 民主主義로 한다.
- ④ 政治體制는 단일 대통령제, 통합된 의회와 행정부 및 사법부로 구성한다.
- ⑤ 期間은 1년 이내에 통합한다.

이러한 합의에 이른 배경은 남북예멘은 다같이 長期戰을 치를 국력이 모자랐고, 양국의 國內政情이 불안했으며, 아울러 아랍연맹국들의 和解壓力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쿠웨이트 頂上會談

1979년 3월 30일 북예멘의 살레 大統領과 남예멘의 이스마일 大統領이 쿠웨이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정상회담은 1979년 2월 남예멘 政府軍이 북예멘의 반정부단체인 民族民主戰線과 합세하여 북예멘

의 國境都市를 공격 함으로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긴장시켰고 아랍연맹이 개입하여 열리게 되었다.

이 회담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국가 憲法起草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위한 기초작업을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② 위 기초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兩國 首腦가 회담을 갖고, 同草案을 승인한다.

③ 憲法草案의 찬반을 묻는 國民投票 및 統一立法府의 설치를 위한 閣僚委員會를 설치한다.

④ 양국 수뇌는 쌍방의 首都에서 매월 회의를 소집하여 憲法起草委員會의 작업상황과 기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검토한다.

(다) 아덴 頂上會談

1981년 12월 9일 북예멘의 살레 大統領과 남예멘의 무하마드 大統領이 아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⁸⁾

8) 남예멘은 1980. 4. 23. 무하마드 大統領이 집권하였다. 「民族民主戰線」과 북예멘의 전투가 치열해지자 남예멘은 리비아 및 이디오피아 등과 「3國友好條約」을 체결하였다. 1981. 9. 15. 「사나 頂上會談」, 1981. 5. 「아덴 頂上會談」을 개최한데 이어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간에 「남북예멘 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이 체결되었다. 그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兩政府의 조정에 관한 문제

양국은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예멘評議會를 구성하고, 이 회의의 지시사항을 실천할 兩國連席閣僚會議와 동 회의를 운영할 祕書局을 설치한다.

예멘評議會는 6개월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連席閣僚會議는 3개월에 한번씩 개최한다.

② 經濟問題

兩國의 경제 및 사회개발계획을 조정하고 兩國聯合公社에 의한 地質 및 수자원 분야의 공동조사와 개발에 힘쓴다.

그리고 양국의 農業指導機構와 農產物販賣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한다. 그 외에 連結道路 및 共同會合場所 등을 설치한다.

③ 教育·文化情報에 관한 문제

국경에 공동학교를 설치하고, 남북예멘 학생들의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다. 그리고 「文化·情報委員會」를 설치하고, 사회교육에 관한

교과내용을 마련하여 教育科目을 통일한다. 또한 라디오·TV의 프로를 공동 제작하여 동시 방영한다.

④ 相互往來에 관한 문제

양국의 국민들에게 서로 왕래할 권리를 부여한다.

⑤ 外交政策에 관한 문제

帝國主義와 시온主義를 반대하며 아랍권(특히 팔레스타인운동)에 대한 행동을 통일한다. 그리고 외국군의 軍事基地 설치를 반대하고 외국군의 駐屯을 배척한다. 또한 내부문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치적·군사적 블록 및 협정에 반대하며 非同盟運動을 지지한다.

(4) 統一憲法(草案)의 合意

1982년 1월 9일 남예멘 압돌라 가님 議長(남예멘 最高人民評議會 幹部會議)은 “양국은 「통일예멘공화국」으로 통합키 위한 憲法草案에 합의했으며, 동 초안이 批准을 얻기 위하여 양국정부 및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統合憲法草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國호 : 統一예멘共和國

- ② 수도 : 북예멘의 현재 수도인 사나
- ③ 국교 : 이슬람교
- ④ 입법부 : 양국 국민들이 선출하는 議員들로 구성
- ⑤ 행정부 : 「統合閣僚評議會」 구성

이 「통합헌법초안」의 내용은 1972년 11월에 합의한 통합원칙 내용 중 국가이념인 共和主義, 民族主義, 民主主義의 규정이 삭제되고, 國教를 이슬람교로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남예멘의 적화통일 야욕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국교인 이슬람교로 계속하여 견제하여 온 북예멘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서 급격한 共和體制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북예멘의 정치적 현실과 아랍保守國家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남예멘의 경제적 현실이妥協되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統合憲法草案」은 남예멘측의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고, 북예멘측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批准도 되지 않았다.

양국간에 근본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政治理念의 조정이 어렵고 양국은 미국, 소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들 背後勢力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통합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1982년 5월 「타이츠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兩國統一問題에 관한 합의를 했고, 1983년 5월 양국간에 '內務省統合'에 합의했다. 그리고 1983년 8월에 양국은 「統合最高委員會」를 설립하고 「統合憲法草案」의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합헌법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1989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남북 예멘 閣僚會議를 개최하여 다시 「統合憲法草案(136條)」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작성했다. 그리고 동년 11월 30일 「아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합의된 統合憲法草案을 6개월 내에 양국 의회의 批准을 받고, 비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國民投票로 확정짓기로 합의했다.

(5) 統一實現

1990년 5월 22일 남북예멘은 남예멘의 수도 아덴

에서 통일을 선포했다.⁹⁾ 현재 통일예멘은 30개월 동안 존속키로 합의한 過渡中央政府가 통치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미 國家組織改編을 끝내고, 경제·사회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과도정부는 모든 면에서 급격한 통합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면서 서서히 신중하게 대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으나 政治·經濟·社會·文化의 통합에 이어 多黨制에 의한 總選實施로 완전통합에 이르게 될 것

9) <통일정책 진행과정과 통일연대>

1980년 5월 아덴정상회담 : 공동경제사업과 통일협력

1981년 5월 사나공동각료위원회 구성 : 통일정책에 대한 완전 합의 발표

1982년 예멘공화국으로 국명 채택

1983년 8월 남북예멘 통일헌법초안 심의

1988년 5월 남북예멘간 여행규제 완화 합의

1989년 11월 여행규제 완화 실시

1989년 12월 아덴정상회담 : 통일헌법초안을 의회의 비준을 받아 국민투표 실시 합의

1990년 5월 22일 통일예멘공화국 선포

10) 統一예멘은 30개월 간의 잠정기간을 두며 5인 대통령위원회에 의하여 집단지도체제로 통치한다는 내용이었다.

① 국명은 통일예멘공화국(The Yemeni Republic)

② 수도는 사나(Sana)

③ 4년임기의 입법의회는 사나에 둔다.

④ 정당조직과 노조활동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⑤ 선거법은 남녀성인에게 투표권 허용

이다.

한편 ‘過渡中央政府’의 구성은 人口比例의 원칙을 적용하여 남북예멘에 要職을 안배하였다. 즉 950만의 인구를 가진 북예멘이, 비록 領土는 넓지만 인구가 250만밖에 안되는 남예멘보다 많은 요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남예멘에 대하여도 충분한 배려를 했다. 즉, 북예멘에서 大統領職을 차지하는 반면 副統領과 總理는 남예멘이 차지했다.¹¹⁾ 또한 國務院의 각 부처에서 장관이 북예멘 출신이라면, 차관은 남예멘의 인사가 차지함으로써 균형있게 안배했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수를 증설하여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이 통일로 인하여 자리를 잃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였다.

11) 南北예멘의 統合은 연방적인 성격으로 統一하였다. 국가최고 행정집행기관은 5인 대통령평의회로 북예멘 3명, 남예멘 2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은 Ali Abdulla Saleh(북예멘 대통령)

부통령은 Ali Salem al-Baidh(남예멘 사회당서기장)

위원은 Abdull al-Karim al-Arashi(북예멘 국회의장)

Salem Saleh Mohammed(남예멘 사회당부서기장)

Abdul Aziz Abdul Ghani(북예멘 수상)

1990년 5월 25일 발표된 통일예멘의 국가조직은 통일헌법에 의하여 大統領評議會·議會·國務院으로 분립되었다.

첫째, 國家最高指導機關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평의회는 5인으로 구성되고(북예멘3인, 남예멘2인)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大統領評議會議長은 국방위원회를 主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과거 북예멘의 대통령이었던 압둘 살레 대통령이 맡고 있다.(부통령은 남예멘의 대통령이었던 알 비드가 맡고 있다.)

둘째, 의회는 국무원에 대한 認淮權과 不信任權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과도기간중 북예멘에서 159명, 남예멘에서 111명, 기타 민족대표(部族) 31명, 총계 301명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국무원은 총내각이 39명으로 구성되었다(북예멘20인, 남예멘19인).

넷째, 군관계는 軍의 最高統帥權者는 대통령이 되고, 참모총장직은 북예멘 참모장이 맡았으나, 국방장관은 남예멘 국방장관이 맡았다.

통일예멘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며, 이슬람교의 戒

律(샤리아)은 신성한 律法으로서 존중되고 국가운영과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즉, 헌법 제3조에 “이슬람을 법이 모든 입법의 主根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통일헌법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理念的要素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경제제도는 混合經濟體制로 하여 생산시설의 國·公有化와 아울러 個人私有도 협용하기로 명문화하였다. 그밖에 경제개혁조치로서 外資導入推進法·所得稅免除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貨幣는 과도기간 중에는 북예멘의 ‘리알’과 남예멘의 ‘디나르’를 混用하기로 하였다. 다만 환율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남예멘의 ‘디나르’를 24% 評價切下하였다.¹²⁾

이상에서 남북예멘의 통합과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과迂餘曲折을 넘고 또 넘어서 남북예멘은 드디어 成功的인 統一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 하며, 그들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

12) 1디나르의 通貨價值는 20리알 수준이나, 사용 거래시에는 1 디나르는 26리알의 환율을 적용키로 하였다.

공산권의 改革 · 開放과 더불어 1989년은 남북예멘에 있어서도 ‘통일의 해’로 기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예멘의 정상들이 상호방문과 회담을 통해 「通行自由化協定」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즉, 1989년 11월 30일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이 남예멘의 수도 아덴을 방문하여 구축된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통행자유화협정」이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統一宣布式을 갖는 데 합의했던 것이다.

그후, 1990년 3월까지 두 차례의 兩國 閣僚會議에서 統一憲法案은 물론 稅金 · 銀行 · 旅券 · 在外公館 등에 관한 46개 법안을 합의하게 되었다.

예멘이 통일된 후, 남예멘의 많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예멘으로 이주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구나 의회의 기구가 두 배로 늘어나 남예멘의 정치인 · 관리들이 수도인 사나로 몰려들고 있다.

다. 統一의 教訓

우리는 예멘의 統一에서 우리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혜로 원용할 수 있는 방식과 교훈을 도출할 필요성을 갖는다.

여러 차례의 國境紛爭과 武力衝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政治·理念·制度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양국 정부당국간의 대화와 협상, 순리적 합의에 의하여 마침내 평화통일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예멘의 통일을 성취시킨 요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예멘은 지도자의 暗殺과 쿠데타 등 양국의 국내정치가 다같이 不安定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대화와 통일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던 남예멘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예멘은 더 이상 開放과 和解로 나아가는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낙후된 경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軍事的 支援을 해주던 소련이改革과 開放을 추구하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사회주의 법률들을 폐기했고, 정

치적으로 多黨制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행제한을 폐지하고 국경을 개방하여 북예멘과 「通行自由化協定」을 체결하게 되었다.

셋째, 통일에 형식상 1:1 혹은 인구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남예멘이 共產體制를 버리고 북예멘의 民主理念과 體制를 따랐다는 점이다.

넷째, 예멘의 통일은 같은 민족이라는 民族共同體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슬람교라는 精神的·文化的·社會的 共通分母가 내재되어 강한 민족주의 성향, 단일민족성에 대한 民族共同體意識이 통일열기로 확산되어 갔다.

다섯째, 순조로운 통합을 위해 북예멘은 남예멘의 처지를 충분히 배려했다는 점이다.

예멘의 통일을 주도해 온 북예멘의 압둘 살레는 ‘어느 한 쪽에 敗北感을 주지 않는 통일’ 또는 ‘통일은 서로를 破壞하지 않는 방법’을 統一政策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은 統合過程에서 철저히 준수되었다. 그리고 남예멘에 壢失感을 주지 않기 위하여 여려가

지 분야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남북예멘의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責任있는 당국자간의 頂上會談과 對話로써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실현 이전에 상부상조, 상호간 공동이익과 번영을 위해 人的·物的交流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국가의 기본이 되는 統一憲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통일실현은 民族의 同質性回復과 民族共同體意識을 바탕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실현은 周邊國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民族自決의 力量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통일협상을 위한 대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中斷되어서는 안되며, 협상의 창구는 單一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獨逸의 統一과 教訓

가. 東方政策과 基本條約

1969년 빌리 브란트 수상이 집권하면서 사민당과 자민당의 聯立政府가 출범했다.

새 정부가 聯邦議會에 제출한 「對外政策에 관한
計劃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政府次元에서 동독과 협상한다.
- ② 양독관계는 特殊關係이며 상호 외국이 아니다.
두 개의 독일은 인정하나 國際法的인 두 개의 국가
를 인정치 않으며, 兩獨關係는 內獨關係이다.
- ③ 서독은 동독을 포함하여 동구제국과 어떠한 武
力行使도 거부한다.
- ④ 서독은 4대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베를린의 지
위가伸張되기를 원한다.
- ⑤ 동독과의 무역관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 ⑥ 「全獨省」을 「內獨省」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全
獨代表'라는 공식용어를 사용치 않을 것이다.

(1) 東方政策

브란트 수상은 1969년 10월 28일 드디어 東方政策의 바탕이 되는 政策基調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독일 내 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는 東獨에 대한 국제법상의 승인이 아니라 국내법상의 승인이다.
- ② 양독은 상호 외국이 아니라 特殊關係이나 동독과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에 입각하여 不可侵條約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
- ③ 독일에 대한 4대 강국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존중한다.
- ④ 「核擴散禁止條約」에 서명할 예정이다.
- ⑤ 양국간 경제·문화부문에 상호 協力할 것이다.
- ⑥ 폴란드와 소련에게 武力使用 포기를 위한 협상을 제의한다.
- ⑦ ‘할슈타인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 ⑧ 폴란드와 ‘오데르·나이세線에 관한 國境協商’을 성실히 전개할 것이다.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은 “동서독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제정치와 군사적 여건의 변화, 유럽에서의 势力均衡의 변화와 독일민족의 統一意志에 따라 통일정책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브란트는 東歐諸國을 대상으로 하는 ‘東方政策’과 병행하여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한 ‘獨逸政策’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는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통일은 역사의 과제로 남겨 두고, 우선 시급한 交流協力を 실현함으로써 동서독의 공동번영과 민족화합을 도모하여 獨逸民族의 共同體意識을 확산시켜 나가야겠다는 ‘獨逸政策(Deutschland und Politik)’을 수립하였다.

우선 동독의 책임있는 당국자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하여 브란트 수상은 東獨訪問을 추진했다.

(가) 頂上會談

1970년 3월 19일 브란트 수상은 동독을 방문하여 에르프르트에서 동독의 빌리 슈토프 수상과 「第1次

頂上會談」을 가졌다. 당시 동서진영간 데탕트추세는 분단된 동서독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두 진영의 尖端에 선 동서독은 歐洲平和에 저해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무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¹³⁾

1970년 5월 21일 서독의 카셀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13) <서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의를 했다>

- ① 동서독은 상호 외국이 아니다.
 - ② 양독관계는 ‘국제법상 一般原則’을 적용한다.
 - ③ 조약쌍방영역의 사회구조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다.
 - ④ 상호간 선린관계로 협력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⑤ ‘베를린에 대한 4대 강국 협정’의 권리를 존중한다.
 - ⑥ 베를린의 地位改善을 위한 4대 강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 <동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의를 했다>
- ① 양독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互惠平等의 原則’을 적용하고, 서독은 ‘全獨逸唯一代表權’을 포기해야 한다.
 - ② 서독은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해야 하고,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 ‘불간섭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③ 양독은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상호승인, 영토보전, 현 國境線을 존중해야 한다.
 - ④ 양독은 동시에 UN에 가입해야 한다.
 - ⑤ 양독은 핵무기의 사용금지, 化學·細菌武器의 제조·사용·저장을 금지하고, 군사비를 50% 감축해야 한다.
 - ⑥ 양독은 제2차 세계대전의 잔재 처리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 ⑦ 서독은 동독에 대한 부채청산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회담에서 서독은 「캣셀 20개항」¹⁴⁾을 제의했다. 아직 協商에 임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동독으로서는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제의하면서 회담의終了를 서둘렀다.

그러나 서독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하여 “상호간의 견조정을 위한 관계장관 및 실무접촉을 갖자.”고 實務會談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결국挫折되고 말았다.

14) 「캣셀 20개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민족의 장래와 결합 및 평화이익을 위한 조약체결
- ② 조약은 양독 국회의 비준 요망
- ③ 국제법상 일반원칙의 적용
- ④ 폭력의 포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 ⑤ 상호독립과 자주성 존중
- ⑥ 일방이 타방의 대표권 행사 및 대행금지
- ⑦ 독일 내 전쟁재발의 방지
- ⑧ 평화공존 방해행위의 근절
- ⑨ 군축노력의 지지
- ⑩ 조약의 효력 발생시기 제시
- ⑪ 4대 강국의 협정을 존중
- ⑫ 4대 강국의 권리·의무를 존중
- ⑬ 자주권의 인정
- ⑭ 상호간 여행·왕래의 확대
- ⑮ 이산가족의 문제해결
- ⑯ 공동경제지역의 선린관계 유지
- ⑰ 제반 교류의 협상개시
- ⑱ 교역에 관한 기준협정 유효
- ⑲ 장관급 「상주대표부」 전권대표 임명
- ⑳ 조약협의 후 국제기구에 동시가입

브란트수상은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동독의 盟邦들을 서독에 끌어들임으로써 종국적으로 동독을 끌어낸다는 목표 아래迂迴的인 外交接近을 시도했다.

(나) 「獨·蘇 不可侵條約」의 締結

197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독은 소련과 ‘相互武力行使拋棄의 原則’에 관한 사항과 ‘國境線 遵守에 관한 問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했다.

한편, 동독의 울브리히트는 “서독과 소련이 「不可侵條約」을 체결한다면, 동독은 서독과의 대화에 흔쾌히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독과 소련의 협상은 순조로웠고, 마침내 1970년 8월 12일 모스크바에서 「獨·蘇 不可侵條約」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全文 5개 항으로 다음과 같다.

- ① 유럽의 평화유지
-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
- ③ 무력행사의 포기
- ④ ‘오데르·나이세線’을 포함한 현재의 國境線 존중

⑤ 독일민족의 自決權에 의한 統一意志 존중

(다) 「獨·波 友好條約」의 締結

서독과 폴란드는 여러 차례 예비회담 끝에 드디어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에서 「獨·波 友好條約」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독과 폴란드는 현존하는 국경선을 존중하고, 각기 領土權을 존중한다.

② 양국은 武力使用을 포기한다.

③ 양국은 경제·과학·문화관계를 정상화한다.

서독은 이상의 두 국가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동안 서독의 對東歐圈 외교 및 동독과의 기본조약 협정에 대한 소련의 拒否要因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동독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게 하였다.

(2) 「東西獨 基本條約」의 締結

1972년 12월 21일 동베를린에서 서독의 바르 首相省次官과 동독의 콜 外務次官에 의하여 「동서독

기본조약」¹⁵⁾이 체결되었다.

全文 1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국은 ‘同等資格의 原則’에 입각하여 상호 정상적 선린관계를 발전시킨다.

② 양국은 UN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主權平等, 獨立, 自主性 및 領土保全의 尊重, 自決權, 人權保護 및 무차별에 관한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③ UN헌장에 따라 양국은 그들의 紛爭問題를 해결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그 사용을 금지한다. 양국은 현재나 장래에도 현존 경계선의 불가침을 재확인하며, 그들의 領土保全을 무조건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④ 양국은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를 國際的으로 代表하거나 다른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없다.

⑤ 양국은 모든 유럽국가들과의 平和的 關係를 촉

15) 「東西獨 基本條約」체결이 있기 까지는 정상회담 2회, 장·차 관회담 70회, 실·국장급회담 200회 등 모두 2년간 무려 272 회의 會談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진시키고, 유럽에서의 安全과 協力を 위해 노력한다.

쌍방은 유럽 내에서 武力과 軍備를 감축시키는 노력을 지지하며, 이로 인하여 참가국의 안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쌍방은 유럽 내에서의 국제적 안전보장을 위해 실효성있는 국제적 감시 아래 전반적이고 완전한 軍備縮小를 목표로 하여, 특히 핵무기와 기타 大量虐殺武器 분야에 있어서의 군비제한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⑥ “양국의 統治權이 각자의 영토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쌍방은 양국의 대내외문제에 있어서 相互獨立性과 自主性을 존중한다.

⑦ 양국은 關係正常化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人道的인 문제를 규정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다.

쌍방은 본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相互利益을 위하여 경제·학술·기술·교통·사법·우편·통신·보건·문화·체육·환경보호 등의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⑧ 양국은 ‘常駐代表部’를 서로 교환한다. 상주대표부는 쌍방의 정부 所在地에 각기 설치한다.

⑨ 양국은 “본 조약의 체결 이전에 쌍방이 각기 체결한 雙務的·多務的 國際條約과 協定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다.

⑩ 본 조약은 批准을 요하며, 비준에 관한 覺書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증거로서 양국의 全權代表는 본 조약에 서명한다.

이 조약의 체결은 ‘東西獨統一憲章’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안으로는 독일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苦痛을 경감시키려는 정치적인 명분을 찾고, 동서독 간의 새로운 關係改善을 모색함으로써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共存共榮한다는 의미를 찾게 되었다.

나. 交流協力의 過程

동서독은 基本條約 체결 이후, 다방면에서 交流協定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분단은 있으나 고통이 없다.”는 말과 같이 諸般交流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첫째, 人的交流는 대표적인 것으로 1987년에는 약 1천만명이 상호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동독은 서독

주민들의 東獨訪問을 허용하고, 연간 약 60일 간의 체류를 허용했다. 한편 서독은 동독 주민들의 西獨訪問을 허용함은 물론 旅費補助金(1인당 100DM씩) 까지 지원해 주었다. 특히 1981년 체결된 「移住協定」에 따라 1983년부터 통일 이전까지 매년 약 3만 명의 移住者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왔다. 서독은 이에 대한 대가로 동독에게 매년 ‘Swing借款’¹⁶⁾의 제공과 더불어 막대한 ‘教育費返還’¹⁷⁾을 제공해 왔다.

둘째, 경제교류는 기본조약 체결 이후, ‘單一經濟單位의 原則’에 따라서 외국무역이 아닌 역내교역으로 규정하고, ‘無關稅原則’을 기본으로 하여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다.

서독은 동독에서 주로 油類, 섬유제품, 농산물, 갈

16) ‘Swing借款’이란, 일정기간 원금과 이자를 연기해 주는 차관으로서 ‘無利子 無償還借款’을 말한다. 서독은 7년을 1期로 삼고 10억DM의 Swing借款을 제공해 왔다.

17) ‘教育費返還’이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자의 학력에 따라 동독에서 이수한 교육비를 현재 서독의 교육비로 환산하여 동독에게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1989년의 20만여명에 달하는 서독이주자에 대한 교육비 반환은 아직 아무런 발표가 없다.

탄 등을 수입하고, 동독은 서독에서 철강, 화학제품, 공업기계 등을 수입하였다.

셋째, 體育交流는 분단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올림픽單一팀’으로 멜버른(1956년), 로마(1960년), 동경(1964년) 대회에 출전한 바 있다. 특히 1974년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더욱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었다.

넷째, 청소년교류는 1982년 체결된 「青少年交流協定」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인 교류가 실시되어 왔다. 특히 서독의 中高校學生들이 동독으로의 修學旅行도 매년 실시되고, 「청소년잼버리」도 동서독이 차례로 교대하면서 개최되어 왔다.

다섯째, 電信交流는 분단 이후 계속되어 왔다. 특히 동서독간에 ‘長距離直通電話’가 개설되어 연간 약 4천만통의 전화를 이용하여 왔다.

그리고 우편물의 교류도 1988년 「郵便協定」의 체결에 의하여 활발히 교류를 추진해 왔다.

그밖에 文化交流, 美術交流, 言論·放送交流, 學術交流 등도 매년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다. 統一過程

(1) 東獨의 變革

1989년 6월 5일 동독 시민들이 동베를린·부다페스트·프라하에 있는 西獨常駐代表部 및 西獨大使館으로 탈주했고, 현지의 서독대사관과 서독상주대표부는 결국 포화상태에 이르러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즉, 8월 6일 부다페스트의 서독대사관이 폐쇄되었고, 동독주재 영국·미국대사관도 폐쇄되었다.

1989년 9월 초순 동독의 젊은이들이 헝가리를 거쳐 혹은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서독으로 移住하면서 동서독 統一論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동독을 방문하여 페레스트로이카에 동독도 함께 참여하여 社會主義國家들의 공동번영을 도모할 것을 제의했지만, 호네커는 이를 거절했다. 그 결과 동독 시민들은 改革·開放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서독으로 이주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5백여명의 東獨人們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로 집단 탈출하여 부다페스트·빈의 관청에 수용되었고, 헝가리 국경수비대들이 탈주에 협조하기도 하

였다.

9월 4일 라이프치히에 소재한 니콜라이교회 앞에서 1천2백여명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改革과 民主化를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어 동베를린에서 2만 5천여명, 라이프치히에서 12만여명, 드렌스텐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드디어 1989년 10월 18일 에리히 호네커는 사퇴했고, 후임으로 에곤 크렌츠 國家評議會 副議長이 신임 黨書記長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크렌츠는 ‘北京大虐殺’의 옹호자로 알려져 곳곳에서 불신임에 봉착하게 되었다.

전국에서 시위는 계속되었고, ‘인간사슬’을 만들어 경찰본부를 에워싸기도 하였다. 시위대는 2백만명을 넘게 되었고, 탈출자는 37만명이나 되었다.

마침내 동독의 內閣은 11월 8일 總辭退하게 되었고,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개방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독 인구의 4분의 1인 430만명의 동독 시민들이 서독행 VISA를 발급받고, 베를린장벽을 넘어와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 모여 ‘케르만의 영광’

을 위해 祝祭를 벌이게 되었다.

결국 크렌츠는 失脚되고, 11월 13일 한스 모드로가 내각수상에 선출되었다. 모드로는 聯立政府¹⁸⁾의 首班으로서 “당과 정부를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

(2) 東獨의 自由總選舉

1990년 3월 18일 동독은 최초의 자유총선거에 우파연합인 「獨逸聯盟」¹⁹⁾이 압승함으로써 통일의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그리고 각 정당별 의석분포를 살펴보면 총 400석의 의석 중 독일연맹(基民黨 및 보수파)이 193석(48.15%), 社民黨이 87석(22%), 民社黨(구 공산당)이 65석(16.33%), 自民黨이 21석(5.22%), 기타(綠色黨 등) 34석(8.40%)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급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파연합인 독일연맹이 제1당이 되었고, 40여년간 동독을 통치해 온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이 제3당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18) 聯立政府는 SED 16명, 자유민주당 4명, 기민당 3명, 농민당 2명 등으로 구성됐다.

19) 「독일연맹」이란 기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 정당을 말함.

자유총선거에서 압승한 독일연맹은 서독의 基民黨과 제휴한 동독의 基民黨을 주축으로 하는 保守聯合으로서, 가능한 한 빠른 통일방법을 취하며, 동서독의 화폐통합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3)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에 관한 條約」의 締結

1990년 5월 18일 동서독은 「통화·경제·사회보장 동맹에 관한 조약」을 서독의 본에서 체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總則

쌍방은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의 마르크를 통일된 통합지역의 共同通貨로 한다. 西獨聯邦銀行은 이 통화영역의 화폐발행은행이 된다.

○ 경제동맹의 기초는 쌍방에서 共同市場經濟秩序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수용한다.

○ 사회보장동맹은 勞動法秩序와 능력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균형원칙에 의한 社會保障制度를 실현한다.

○ 종래의 東獨憲法 가운데 이와 저촉되는 규정

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쌍방은 본 조약의 실시에 있어서 국내법에 준하여 정부간에 共助를 한다.

○ 동독은 실효적·잠정적 法保護를 포함하여 법원에서 법적보호를 받는다.

○ 본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을 仲裁法院의 결정에 부탁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C法院의 재판소장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 의해 처리된다.

○ 쌍방은 「合同政府委員會」를 구성한다.

② 通貨同盟에 관한 規定

○ 쌍방은 通貨同盟의 설립에 의해 서독마르크는 全通貨地域內에서 지급수단·청산수단·가치보장수단이 된다.

○ 서독연방은행은 通貨安定目的을 위해 그 자신의 책임하에 쌍방 정부의 지시와 관계없이 全通貨地域에서 통화유통과 신용조달을 연방은행의 제도에 따라 규율한다.

○ 임금·급여·장학금·연금·집세·지대 등 정기적 지불은 1:1의 비율로 교환한다.

○ 동독마르크로 된 債權, 債務는 ‘1서독마르크對 2동독마르크’의 비율로 교환한다.

○ 동독의 화폐교환은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독에 본부를 둔 기관들에만 적용되며, 동독의 銀行口座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 동독에 거주하는 개인의 예금은 일정 한도액 까지를 1:1로 교환하고, 연령별로 한도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經濟同盟에 관한 規定

○ 동독은 經濟·財政政策的 조치들이 사회적 시장경제와 조화되는 것을 보장한다.

○ 동독은 COMECON諸國과 실행하고 있는 對外經濟關係를 존중하면서 EC의 法과 經濟政策目標에 일치되도록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 동독은 對外經濟交流에 있어 ‘자유무역의 기본원칙’, ‘GATT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동독은 새로운 시장조건에 맞게 기업의 구조적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 동독은 농업·식량에 대한 EC규정에 따라 價格維持制度와 對外保護制度를 도입하여 서독의 농산

물가격에 부합시킨다.

- 쌍방은 「獨逸環境聯盟」의 설립에 협력한다.

④ 社會保障同盟에 관한 規定

○ 동독은 단결권, 賃金自主決定權, 노동쟁의권, 노동협약, 노사공동결정권, 해고보호 등 서독의 법률을 채택한다.

○ 동독은 사회보장제도를 서독의 수준에 이르도록 개선·도입한다.

○ 동독은 서독의 「雇傭促進法」과 일치하는 고용촉진을 포함한 ‘失業保險制度’를 도입한다.

○ 동독은 「年金法」을 서독의 임금, 부담금원칙에 기초하는 「年金保險法」에 일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동독은 「醫療保險法」을 서독의 것에 일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동독은 「產災保險法」을 서독의 것에 일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동독은 서독의 「生活保護法」에 일치하는 ‘社會保障制度’를 도입한다.

○ 과도기간중 동독이 필요경비를 충당치 못할

경우, 서독은 동독에게 財政補填을 한다.

⑤ 國家豫算과 財政에 관한 規定

○ 동독 예산은 서독의 예산구조에 따라 편성한다.

○ 동독의 地方機關들은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힘쓴다.

○ 起債와 補償支給은 동서독 재무장관의 합의에 의한다.

○ 서독은 예산적자를 补填하기 위해 1990년 하반기에 220억 마르크, 1991년에 350억 마르크의 財政支援을 한다.

○ 쌍방은 關稅領域이 본 조약의 적용영역도 포함한다는 데 합의한다.

○ 쌍방은 「租稅」 및 「獨占禁止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⑥ 결론

○ 본 조약은 동서독이 제3국과 체결한 ‘國際法上 條約’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條約은 동서독인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4) 「2+4協定」의 締結

1990년 5월 5일 서독의 본에서 시작된 「2+4회담」은 4차 회담²⁰⁾을 마지막으로 하여 東·西獨과 美·英·佛·蘇가 독일통일의 대외관계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다.

「2+4會談」에서 가장 큰 장애는 통일독일의 NATO 가입문제였다. 이 문제는 제3차 회담시 소련측이 대폭 양보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이때부터 「2+4會談」은 실무문제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다. 서독은 “「오데르·나이세線」現國境線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 힘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불안도 말끔히 씻어 주었다.

제4차 회담에서 부각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에서의 소련군 撤收費用 부담의 문제이다.

그러나 서독은 1994년까지 76억 \$을 소련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20) 「2+4회담」의 4차례 개최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차회담 : 1990. 5. 5. 본에서 개최

제2차회담 : 1990. 6. 7. 동베를린에서 개최

제3차회담 : 1990. 7.17. 파리에서 개최

제4차회담 : 1990. 9.12. 모스크바에서 개최

둘째, 소련군의 철수 후 동독영토 내 核武器配置禁止와 NATO의 軍事訓練禁止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독이 “통일독일의 군대를 37만명 이하로 유지하고, 化生放武器를 생산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셋째, 西獨駐屯 미군의 추가철수 문제이다.

소련은 동독에서 완전 철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군도 7~8만명 정도로 減縮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소간의 막후 접촉으로 합의하게 되어 원만히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9월 12일 「2+4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영토 및 전체 배틀린으로 구성되며, 통일독일과 폴란드는 國際法上 效力を 갖는 협정을 통해 현재의 국경을 인정한다.

② 통일독일의 헌법에 국가간의 평화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졌거나, 그러한 의도 아래 수행된 侵略戰爭 준비와 같은 행위는 違憲이며, 응징돼야 할 違反行爲임을 명시한다.

③ 통일독일은 核·生物·化學武器의 生產·保有·統制에 대한 포기입장을 재확인한다. 3~4년 내에 군병력을 37만명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④ 통일독일과 소련은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에 있는 蘇聯軍의 주둔조건 및 기간 그리고 1994년을 시한으로 한 소련군의 철수 완료 등의 문제를 협정을 통해 해결한다.

⑤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에 소련군이 주둔하는 동안 美·英·佛의 군대는 통일독일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베를린에 주둔한다.

⑥ 戰勝國들에 귀속되어 있었던 통일독일의 권리들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한 및 의무와 더불어 본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⑦ 美·英·佛·蘇는 현 시점부터 베를린과 전 독일 영토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권리 및 의무 발동을 중지한다.

⑧ 본 협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국議會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본 협정은 관련국 의회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⑩ 본 협정의 原文은 서독정부가 보관한다.

(5) 政治的 統合

1990년 8월 31일 동서독은 「第2國家條約」이라 불리우는 「政治條約」을 체결하여 통일 이전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文書를 만들었다.

서독의 연방의회와 동독의 인민의회의 批准을 거친으로써, 통일실현은 10월 3일 宣布만 남은 셈이 되었다.

이 조약은 本文 제45조와 3개의 附屬文件, 1개의 議定書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조약은 서독의 基本法 중에서 불가피한 조항만 개정하였다.

그밖에 통일의 기본원칙을 확정하였고, 성질상 쉽게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1 장 編入의 효력

제 2 장 基本法

제 3 장 法령의 調整(서독법령의 過渡期의 적용, 동독법령의 계속적용, EC법 적용문제 등)

제 4 장 국제법상 조약 및 합의사항

제 5 장 公共行政과 法

제 6 장 公共財產과 財務

제 7 장 노동·사회·가족·부녀자·건강과 환경보호

제 8 장 문화·교육·학문·스포츠

제 9 장 經過 및 終結規定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①국가와 헌법 ② 소유권, 재정, 재산의 사유화 ③노동, 사회보장과 관련 되는 조항들이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의회에서 “서독의 基本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다.”는決議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통일된 독일은 두 차례의 선거를 거쳐 연방국가로 통합되었다. 10월 13일 동독은 5개의 州議會²¹⁾와 政府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하였고, 12월 2일 통일독일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首相을 선출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21) 5개주 : ①부란덴부르크주 ②맥클렌브르그-포어풀마른주 ③작센주 ④작센-안할트주 ⑤튀링엔주로 東獨은 西獨에 편입 되며, 통일독일은 15주 1市(베를린)로 된 연방국가가 된다.

라. 統一後 分野別 統合實態

(1) 政治分野 統合

(가) 行政體制 改編

독일은 통일 후, 우선적으로 舊東獨 公共機關의 종사자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감축대상은 ①國家保衛機構에 종사한 자 ②구동독 共產黨에 적극적으로 봉사한 자 ③知識·性格上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등이다. 이들은 과도기적 경과기간(50세 미만 6개월, 50세 이상 9개월) 동안 과거급여의 70%를 받다가 자동적으로 실직되었다. 그리고 해고되지 않은 舊동독 지역의 공무원에 대한 再教育을 실시하였다. 특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專門知識과 理念教育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舊서독의 공무원이 舊동독 지역으로 轉補發 슈되었을 경우, 봉급상의 혜택, 轉補에 따르는 생활비 보상, 여행경비·별거수당 지급, 승진상 혜택 등 많은 특전을 부여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동독 지역으로 전보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司法體制 改編

구동독에서는 司法院가 헌법 규제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州(新設 5個州)에 自由民主的基本秩序와 法治國家理念의 보장기능을 담당하는 「憲法裁判所」를 설치·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舊동독의 「最高裁判所」와 「大檢察廳」을 폐지하였다. 한편 구동독 지역에 행정·재정·노동·사회 사건을 독자적으로 관할하는 「特別法院」을 새로 설치·운용하게 되었다.

또한 구동독의 판·검사에 대한 審查를 단행하였다. 과거의 경력과 정치적 하자 유무, 법률지식의 專門性 유무, 독립적 判決能力 유무 등에 대한 기준에 합격한 판·검사들은 일정기간의 再教育을 받고 3~5년의 試補期間을 거쳐야 終身法官으로 임명받게 되었다.

(다) 舊東獨의 對外關係 處理

과거에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條約이나 協定’²²⁾의 처리는 ①信賴保護 ②관련 당사국들의 이해 ③서독

22) 舊東獨이 外國과 체결한 條約과 協定은 ①多者間 542件, ②兩者間 2,551件으로 약 3,000여건에 이른다.

측의 계약상 의무 ④自由·民主·法治國家的 기본원칙에 따라 ⑤EC의 관할권 존중 등의 기준에 의하여 '계속유효', '조정', '효력상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舊東獨과 第3國間의 외교 및 영사관계는 1990년 10월 3일을 기하여 소멸되었음을 通報하였다.

한편 舊東獨 外交官은 심사기준을 거쳐 해고되었으며, 舊東獨 外交公館은 연방재산으로 귀속되었다.

과거 동독이 國際機構나 다자간 조약기구에 지고 있던 債權과 債務는 통일 이후 '特別管理對象'으로 취급하여 관계국과의 協商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2) 軍事分野 統合

통일과 더불어 聯邦國防省은 구동독 인민군의 지휘권과 병력, 장비, 인사 등 軍事統合을 위한 과도기 임무수행을 위해 「獨逸聯邦軍 東部司令部」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1991년 6월 30일까지 군사통합 문제를 관장하다가 7월 1일에 해체되었으며, 각각 부대별

로 陸·海·空軍參謀本部의 예하로 편입되었다.

한편 東獨人民軍을 포함한 독일연방군의 수를 1994년까지 37만명으로 減縮할 계획이다. 그들 중 우수한 兵力を 선발하기 위한 심사가 이루어져 2년 간의 試補期間을 설정하였고, 이미 선발된 자는 ‘時限附 軍人’으로 근무케 한 뒤, 최종적으로 正式軍人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聯邦軍은 구서독의 軍指揮官 2,500여명을 舊東獨 人民軍 부대의 지휘관·참모로 배치했다.

구동독 인민군 중 50세 이상과 大領以上의 현역들은 모두 轉役시켰고, 직업군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서독 수준의 70%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있으나, 점차 그 격차를 해소하여 동등한 대우를 할 예정이다.

현재 구동독 인민군 지휘관중 5,000명의 장교들은 새로운 체제하의 民主軍隊에 적응하도록 再教育을 받고 각 부대에 再配置되었다.

(3) 經濟分野 統合

(가) 舊東獨의 經濟再建

구동독의 경제는 45년에 걸친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유산으로 생산성이 없는 經濟構造가 현대화되고 노후한 生產施設이 재정비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요구된다. 또한 企業投資의 장애요인으로 ①生産手段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적소유관계의 미확정 ② 각종 認許可, 證明書를 발급해 줄 행정체계의 미구축 ③社會間接資本施設의 미확충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 경제구조의 재편을 살펴보면 첫째, 農業分野는 농업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다. 즉 1990년 96만명에서 1992년 29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업인구의 대부분은 他職種으로 전환했거나 또는 조기은퇴했거나, 실업상태로 직업전환을 위한 訓練중으로 감소현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91년 7월 7일 「農業構造調整法」을 제정하여 생산수단의 소유권 확정,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조개편, 家族農 형태의 ‘個人自營農’과 ‘會社農’ 형태로 등록 토록 하였다. 그리고 農地 및 山地의 사유화를 단행

했고, 소유주가 분명치 않은 土地는 ‘임대차의 형식’을 취했다.

둘째, 상공업분야는 통일 이후 「信託廳」을 설치하여 11,926개 管理企業中 8,175개를 매각 처분했고 8,848건의 不動產을 매각했다. 즉 「신탁청」은 1993년까지 私有化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그리고 구동독 지역의 投資活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期限附 投資補助金, 특별감가상각을 허용하여個人投資를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구동독 지역의 낙후된 交通·郵便·通信·都市建設·環境保護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統一과 관련한 財政問題

구동독 지역의 州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터에 설상가상으로 구동독 지역 기업의 잇다른 도산에 의한 法人稅의 稅收가 부진하여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독일연방정부는 구동독 국영기업의 民營化推進에 박차를 가하여 각종 특혜(양질의 노동력, 막대한 구매력, 동구시장 진출의 교두보 등)를 내세워 西方企

業의 진출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서방기업의 진출 장애요인으로 貨金上昇, 投資財源 확보 미비, 생산시설의 노후화, 지방행정체계의 未備 등으로 부진한 형편이었다.

그리고 이른바 ‘統一費用’이라는 막대한 財政支出需要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소요될 ‘통일비용’은 약 2兆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매년 2000억 마르크가 소요되는 금액이다.

1991년 연방정부는 개인 및 법인소득에 대해 7.5%의 세금 인상을 단행했다.

(다) 所有權·財產權問題

통일 이후, 공권력에 의해 몰수된 以前 財產權의 반환 및 보상이 실시되었다.

1949년 10월 7일 이후, 反法治國家的으로 몰수된 財產權은 「財產法」에 의하여 이전 소유자가返還申請을 할 경우에는 반환시켜 주었다.

그러나 공공단체나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구동독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7월에 개정된 「財產法」에 의하여 반환되지 않고

「신탁청」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임대·매각되고 있다.

(4) 社會分野 統合

(가) 勞動問題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就業人口는 현저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分野別로는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현저하게 취업인구가 감소하였다. 즉 農林水產分野는 96만명에서 29만명으로, 工業分野는 426만명에서 212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구동독 지역에서 구서독 지역으로 有經驗者, 專門人力이 대거 이주해 갔다. 그들은 자녀교육, 문화생활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로부터 1992년 6월까지 약 51만명이 移住했고, 집은 구동독 지역에 있으면서 구서독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같은 기간 동안에 약 53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공식적인 失業者는 약 117만명이나, 단축노동자, 정부지원 고용창출조치 해당자, 직업훈련자 등을 합치면 약 210만명에 이른다.

(나) 生活水準

舊東西獨 지역간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각했다.

1991년 임금의 격차는 구동독 지역의 노동자 1인당
月 평균임금이 1,647마르크인 반면, 구서독 지역의
경우는 3,697마르크였다.

현재 168만명에 이르는 殘留 公共機關 종사자들
은 구서독 지역의 70%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있
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 비하여 구동독 지역의 實質貨
金은 상당히 상승되었다. 즉 1989년보다 28%가 인
상되었다.

(다) 社會保障制度 確立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도 구서독 지역과 마찬
가지로 年金, 醫療保險, 失業保險 등 사회보험은 국
가의 감독하에 지방자치기구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年金制度는 구동독에서 강제 가입한 연금,
임의연금 등이 구서독과 같이 ‘하나의 年金體系’로
통합되었다.

1991년 1월 1일부터 구동독 지역의 5개 주에 年金
管理機構가 설치·운용되었다. 그리고 구동독 지역의
年金財政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1990년에
20억마르크를 보조했다.

또한 醫療保險制度에 있어서도 똑같이 실시하고 있다. 즉 구동독 지역에서도 질병이 발생했을 때, 6週까지 고용주가 임금을 계속 지불하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기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兒童手當」, 「社會扶助」 등 구서독과 같은 사회보장체제를 도입했다.

(5) 異質性 克服問題

국가적·제도적 통일은 행정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심리적인 이질화 극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45년간 구동독의 共產政權治下에서 教條主義의이고 全體主義의인 교육을 받은 결과로 인하여 급작스런 변화에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異質性의 극복을 위해 상이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에 기인하는 經驗 및 認識體系를 同質化시키기 위하여 ‘政治教育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요인은 첫째, 과거 共產體制下에서 개인은 강요만 받아왔고, 개인의 불만이나 고민을 표출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인격이 극도의 폐쇄성으로 규격화되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自發性과 責任意識이 부족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多元的인 民主主義社會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둘째, 미해결된 財產權問題가 많은 구동독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셋째, 통일 이후 과거 가해자들에 대한 清算問題가 제기될 때, 구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體制轉換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 있다.

이와 같이 異質性 克服을 위해 연방정부는 구체적인 ‘政治教育의 方向’을 모색하고 있고, 새로운 다원주의적 政治文化에 익숙해 지도록 다양한 정보와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고 있다.

마. 統一의 教訓

아마도 今世紀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의 하나는 이데올로기로서 共產主義가 퇴조하는 가운데 동서독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 사실일 것이다.

半世紀 동안 대치상태에 있던 異質社會가 한 방울의 流血도 없이,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시일 안에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구나 통일의 형태도 기존의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統合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우리의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동서독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데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직접적인 導火線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페레스트로이카가 계기가 돼서 東歐에 體制改革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東獨의 지도자들이 體制競爭에서 사회주의의 패배를 自認하면서 독일통일은 급진전되었다.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統一은 외세나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民族 스스로의 결의와 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서독의 통일문제를 美·英·佛·蘇 4대 점령국은 물론 東西 유럽국가들도 국제 회의의 議題로조차 올려놓지 않았다. 즉, 동서독의 통일이 기존 유럽의 질서를 깨뜨리고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다.

둘째, 統一은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씩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라는 점이다.

서독정부의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對東獨政策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독은 일찍이 동서독정상회담, 동방정책 구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제반협정 체결 등으로 동독과의 人的·物的交流를 증진해 왔고, 이를 계기로 동독에게 많은 원조를 제공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 동서독의 統一實現에서 배울 수 있는 보다 큰 教訓은 정치·경제 및 사회복지면에서 市場經濟體制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서독이 평화적으로 동독을 吸收할 수 있었던 것은

동독국민 스스로가 社會主義體制를 버리고, 서독의 市場經濟體制를 택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동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를 막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서독은 資本主義 경제체제이면서도 일반생활 수준이나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복지면에서도 동독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동독국민들은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평화적인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넷째, 政治統合 이전에 먼저 經濟統合을 실현하여 4대 전승국가들로 하여금 정치통합에 반대할 수 없도록 機智를 발휘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동독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동독의 대내외부채, 예산적자를 비롯하여 도로·전기·통신·기간산업 정비 등 막대한 재정을 떠안으며 통일로 가는 그 力量과 忍耐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서독은 통일을 위한 이른바 「독일판 마셜플랜」으로 1150억마르크(약 700억 \$)를 조성할 계획인데, 경제전문가들은 실제로 統一費用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2조~2조 7천억마르크 가량 들 것으로 추산하

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돈으로 샀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韓國은 西獨을 배우고, 北韓은 東獨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서독의 정부당국이 일관된 통일정책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國論이 일치되어 國力を 모아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배워야 하고, 시장경제체제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우월성을 北韓住民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통일을 위한 基金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동독을 따라 배움으로써 대남적화야욕을 하루빨리 버리고, 혀된 망상에서 깨어나 民族共同體意識으로 돌아와 진정한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인 통일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5. 結 言

결국 우리는 남북베트남의 統一敎訓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自由民主主義를 정착시켜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價值와 理念의 우수성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敗亡해 버린 남베트남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안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부정부패와 軍事獨裁로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反政府示威가 극에 달한 혼란의 와중에서 독버섯처럼 자생한 容共勢力인 ‘베트콩’의 발호를 수습하지 못한 채, 밖에서 쳐들어오는 북베트남에게 비참하게도 무너져버린 남베트남의 패망 사실을 상기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안으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강력한 정부’로서 民主發展과 經濟繁榮, 社會安定으로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하고, 밖으로 북한의 ‘對南赤化統一의 野慾’을 저지·분쇄시켜야 한다. 아직도 북한은 적화야욕을 벼리지 못한 채, 최근의 「南朝鮮勞動黨 間諜團事件」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統一을 ‘베트남식’을 원용하여 달성하려는 듯한 북의 태도에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까지 채택되어 바야흐로 ‘交流協力의 時代’를 열어야 할 마당에 南北韓相互核

查察問題에 대한 북한측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떨쳐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남북예멘의 統一敎訓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베트남통일이 武力統一로 끝나자 많은 학자들이 “理念과 體制가 서로 다른 분단국의 통일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戰爭이나 革命으로 먹어야 가능하다.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총선거에 의한 통일은 다만 환상일 뿐이지 사실상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論據를 뒤엎고 남북예멘은 기어코 장기간의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게 統一憲法을 제정·공포하였고, 그 절차에 따라 ‘총 한방 쏘지 않고, 피한방을 흘리지 않고’ 平和統一을 실현했다.

바로 우리 정부가 일찍이内外에 천명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명시된 統一憲法의 제정과 같은 맥락의 수순을 밟아 그들은 통일을 실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統一對話에 임해야 하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북한측을 설득 시켜 당장이라도 실천 가능하고 가장 합리적인 ‘우

리의 統一方案'의 구현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동서독의 統一敎訓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동서독은 일찍이 ‘분단은 있으나 고통은 없다.’는 말과 같이 45년의 분단세월을 交流協力으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오다가 국제정세가 통일환경에 유리하게 급변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대국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民族自決의 領域’을 최대한 넓히면서 마침내 통일대업을 성취하게 되었다.

우리는 北方政策의 성공적 결과로서 통일환경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즉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구소련과 중국과도 정상적인 國交關係로 전환했고, 남북관계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화해·불가침·교류협력시대’로 進一步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남북한 현안문제인 相互核查察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한 터전 위에서 ‘通行·通商·通信’의 본격적인 ‘交流協力時代’를 전개하여 民族共榮과 한민족공동체의 自尊을 높이기 위해 힘찬 전진을 해야 한다.

한편 통일된 독일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실을 거울삼아 우리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統一의 날’을 예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통일준비를 서둘러야 하겠다.

分斷國의 統一과 教訓 (통일총서 / 20)

1993年 2月 17日 印刷

1993年 2月 22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踰2洞 山73-13

電話：901-7123~4

印刷處：江聞印刷社

(통연 93-2-10)

